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과세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과세면제) ①</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p>	<p>1.</p> <p>.....</p> <p>.....</p> <p>.....</p> <p>.....</p>
<p>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p>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부터</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도시재개발법(부분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부분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등이 시행한다.